

「늘~하나 급여통장」 특약

제1조 적용범위

“늘~하나 급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제4조 이자지급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1. 보통예금: 매년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및 MMDA: 매년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일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 ①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필수요건의 월별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해당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거래 시 횡수제한 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월 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요건)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시

(주) 급여이체 인정기준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 급여일 ±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급여일 사전 등록)
금액	● 최소 건당 50만원
제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단,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 -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단, 타인에 대한 '이체'거래는 인정) ● 가맹점대금, 대출연동,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예시: 예금주명 적요)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 거래)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2.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3.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4.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5. 통장 재발행

- ② 은행은 제1항의 필수요건의 월별 실적을 가입 익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해당월의 익월 첫 영업일부터 말일까지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아래 항목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시 월5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추가요건 중 1건을 충족 시 5회를 추가하여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가요건)

1.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3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
2. 아파트 관리비를 이 예금에서 이체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

1.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2.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가입 계좌의 경우 6월 실적부터 평가하여 7월부터 본 약관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부칙1>

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